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3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용선·황 희·이학영

주철현 • 오세희 • 양부남

박희승 · 임미애 · 김 윤

김성화 • 박지혜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또는 제11조에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5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	
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	
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	
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
	<u>ब</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